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5년 6월 23일
행 정 재 경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년 5월 29일, 고성미 의원
-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9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255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25년 6월 23일)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촉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개선하고, 공유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공유 촉진을 강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금천구 공유사업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공유를 통한 경제·복지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 폐지된 조례 삭제 및 현행 조례 반영(안 제5조제5항)
-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 체계로 전환(안 제6조 및 안 제8조)
- 띄어쓰기 등 어문 규정에 따른 표기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7조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검토보고 : 전문위원 박병규

나.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공유 촉진위원회의 의결권을 추가하여 공유 촉진을 강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의2에서는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 안 제6조에서는 기존의 자문 기능에 더해 공유촉진위원회에 의결권을 부여하여 그 기능을 강화하고
 - 안 제8조에서는 공유촉진위원회를 비상설 체제로 전환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
- 금천구는 2016년 ‘서울시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공동협력사업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고, 2022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실적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성과를 거두었으나, 최근에는 참여 및 관심 저조와 활용도 감소로 사업 전반이 침체되고 있음.
- 공유 활성화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현재 침체된 운영 현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지역 실정에 맞는 수요 기반형 콘텐츠 개발, 참여 유도 인센티브 마련, 민간과의 협력 확대 등의 다각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본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생 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